실질: 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실질은 정당한 규제 차익의 조건입니다. 실질에는 고객이 구분해야 할 세 층위, 즉 규제상 실질, 세무상 실질, 회사법상 실질이 있습니다.

규제상 실질은 라이선스 법률이 요구하는 현지 거점을 말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스위스에서 결정을 내리는 경영기관, 스위스에서 인가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스위스에 있는 준법 및 위험관리 기능, 스위스에 보관되는 기록을 뜻합니다. 이 요건은 모든 직원이 스위스인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위스 법인이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는 곳일 것을 요구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MAS가 주요 지급기관(MPI)에 기대하는 거주 상임이사, 상설 영업장, 현지 준법감시인을 뜻합니다. 또한 기술위험관리 지침(Technology Risk Management Guidelines)이 라이선스 보유자의 통제 아래 둘 것을 요구하는 기술 및 데이터 체계와 싱가포르에서 보관되는 고객 자산도 포함됩니다. 두 규제당국 모두 신청 단계에서는 예정 경영진 면담을 통해, 라이선스 취득 후에는 검사를 통해 실질을 확인합니다. 두 당국 모두 라이선스 보유자가 통제와 책임을 유지하는 한 서면 계약에 따른 그룹 내 기능 아웃소싱을 허용합니다. 이중 허브 그룹은 바로 이 방식으로 실질은 공유하지 않으면서 기술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1]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세무상 실질은 과세당국이 법인을 거주자로 인정하고 조약상 혜택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거점을 말합니다. 스위스는 연방직접세법 제50조와 칸톤(주) 법률에 따라 실질적 관리 장소를 보며, 이사회가 해외에서 열리고 결정이 해외에서 내려지는 회사는 칸톤 과세당국이 스위스 거주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 s. 2에 따라 '통제 및 관리'(control and management) 개념을 통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2024년부터는 해외자산 처분이익에 대해 Section 10L의 경제적 실질 요건을 부과합니다. OECD의 BEPS 작업과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는 대규모 그룹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15%의 하한을 더합니다. 스위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싱가포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격 국내 최저한 추가세를 통해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러한 그룹 내에서 디지털 자산 이익을 무세 법인에 계상할 유인이 사라졌습니다.[2]

회사법상 실질은 회사법이 요구하는 거점을 말합니다. 스위스 AG는 스위스 채무법 제718조 제4항에 따라 단독 서명권을 가진 이사 1명 또는 공동 서명권을 가진 이사 2명이 스위스에 거주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는 회사법(Companies Act 1967) s. 145에 따라 싱가포르에 통상 거주하는 이사를 최소 1명 두어야 합니다. 이는 명의상 이사 서비스로도 충족되는 최소 요건입니다. 실질의 하한일 뿐 결코 그 증거가 아닙니다.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명의상 이사를 발견한 규제당국은 회사 등기부에 무엇이 기재되어 있든 이를 서류상 회사의 증거로 취급합니다.[3]

체크리스트

스위스 또는 싱가포르 법인이 사업의 실제 본거지라고 주장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이사회가 해당 관할에서 열리고, 의사록을 그곳에 보관하며, 라이선스 대상 사항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가; - 최고경영자 또는 최소 1명의 상임이사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류허가를 받아 그곳에 거주하는가; - 준법감시인과 자금세탁방지 책임자가 그곳에 근무하며 현지 이사회에 보고하는가; - 고객 계약의 당사자가 현지 법인이며, 고객 자산을 현지 법인이 통제하는가; - 인가 활동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현지에서 운영하거나, 규제당국이 검토한 서면 계약에 따라 아웃소싱하는가; - 그곳에서의 실질적 관리를 근거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로 세금 신고를 하고, 이전가격 문서가 그 법인이 그룹을 위해 수행하는 기능을 보여 주는가; - 웹사이트와 마케팅이 법인의 라이선스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다른 관할의 평판을 빌리지 않는가.

주

1. FINMA Circular 2018/3 "Outsourcing – banks, securities firms and insurers"(개정 포함) 및 금융기관법 제14조를 통한 금융기관법상 기관에 대한 적용. MAS, Guidelines on Outsourcing, 2018년 10월(개정 포함), 및 지급서비스 라이선스 보유자를 위한 MAS Notice on Outsourcing. 운영 모델에 관하여는 제P편 제IV장 참조. ↩
2. 연방직접세법 제50조. Income Tax Act 1947, s. 2(1)의 "resident in Singapore" 정의 및 Section 10L. 대규모 기업집단의 최저과세에 관한 령(MindStV, SR 642.161), 2024년 1월 1일 시행(QDMTT), 소득산입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Multinational Enterprise (Minimum Tax) Act 2024 (Singapore),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제G편 제IX장 및 제M편 제IX장 참조. ↩
3. 스위스 채무법 제718조 제4항. Companies Act 1967 (Singapore), s. 145(1). 싱가포르의 명의상 이사와 명의상 지위의 공시를 요구하는 2024년 회계기업규제청(ACRA) 개혁에 관하여는 제P편 제III장 참조.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